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08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의자 : 이해식 · 조계원 · 홍기원

양부남 · 박상혁 · 차지호

강선우 · 한민수 · 김영진

김교홍 · 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1.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를 면제한다.	1. <u>2028년 12월 31일</u> -----.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 <u>2028년 12월 31일</u> -----.

